

재단법인 순천대학교발전지원재단 운영 시행세칙

제정 1994. 4. 25. 개정 1998. 11. 19. 개정 2001. 1. 24.
개정 2008. 4. 30. 개정 2010. 12. 6. 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0. 23. 개정 2016. 7. 7. 개정 2018. 8. 31.
개정 2019. 6. 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순천대학교발전지원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중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법인공익 이익의 수혜자 선정방법) 정관 제4조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인공익 이익의 수혜자 선정방법은 이사장에게 위임하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2 장 임 원

제4조(상임이사의 임무) 정관 제17조 제2항에 따른 상임이사는 순천대학교 기획처장이 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재단 사업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5조(임원의 임기) 이사장 및 제6조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순천대학교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이사 중 순천대학교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본부장, 사무국장, 순천대학교 총동창회장 또는 총동창회장이 추천한 자를 당연직 이사로 하고, 기타 이사 및 감사는 순천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명예이사) ①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관 제16조에서 정한 임원의 종류와 정수외에 약간 명의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② 명예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사 무 국

제8조(사무국장의 임무)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두되, 사무국장은 순천대학교 기획처 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재단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단 사무국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과 복무에 관한 사항

제9조(사무직원) ① 사무직원은 상근직원과 비상근직원을 둔다.

② 상근직원은 발전기금 재원으로 이사장이 채용하는 자로서 채용요건 및 보수, 복무규정은 순천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에 준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제 4 장 발전기금의 조성

제10조(발전후원회) 정관 제4조제1항의 목적사업 달성과 이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발전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발전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한다.
2. 위원은 외부 인사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재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